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6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심미경, 오금란,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종태,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각종 행사 및 축제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집행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거나,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요 행사에 대해 예산 정보를 포스터, 리플릿, 온라인 홍보물 등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여, 시민이 직관적으로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사예산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행사예산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행사예산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산 공개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사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행사, 관광 행사, 체육행사, 박람회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행사예산 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시 사업부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자치구 등 보조사업자는 행사의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내용) 제3조에 따라 홍보물에 공개하여야 하는 행사예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
2. 재원별 금액(국비, 시비, 자치구비 등)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방법) ①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기할 때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은 홍보물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아보기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표기 크기는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행사예산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여부의 반영) 서울특별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사가 다음 연도에도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 연도의 해당 행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행사의 예산 정보를 포스터, 리플릿, 온라인 홍보물 등에 명확히 표기하여 시민이 직관적으로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자료 등 검토결과¹⁾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별다른 영향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해당규정에 의한 재정소요 변화 검토] 홍보물 내 행사예산 별도 표기(안 제3조 등 강행규정)는 기존 행사 홍보물의 정보 전달 요소(제목, 본문, 핵심 메시지, 연락처 등의 내용적 측면)에 행사예산 사항 하나가 더 추가 되었을 뿐 ① 홍보물 수량(Q)이나 ② 디자인적 요소(복잡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시각적 측면)와 같은 총제작비 변동요인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통상 정보전달 요소의 경우 대량의 내용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기존 홍보물 제작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